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58,006	11,772	26,869	71,751	43,690	840	1,693	1,290	102
국 비	78,364	8,277	10,724	35,486	23,781	90	6	0	0
시·도비	28,565	1,056	3,220	20,902	3,352	36	0	0	0
시·군·구비	51,077	2,439	12,925	15,363	16,557	714	1,687	1,29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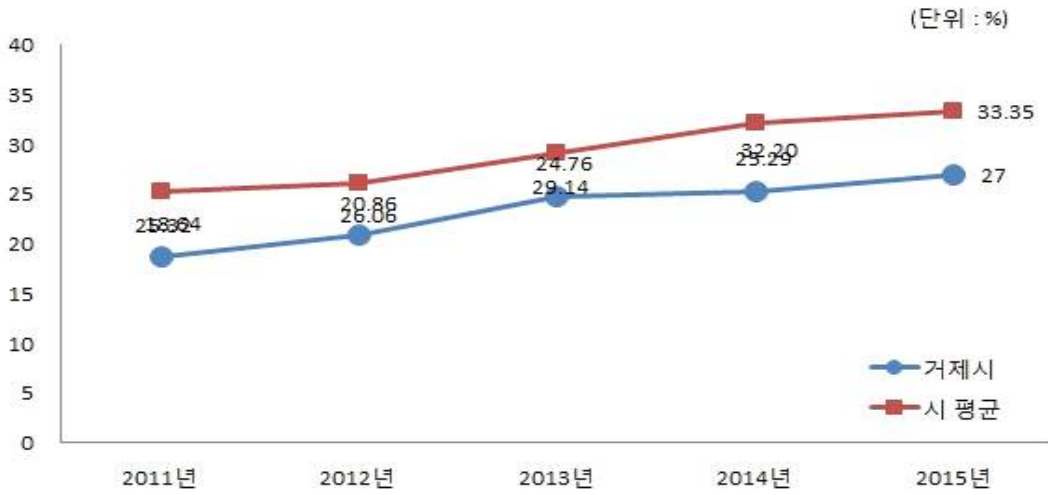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429,739	459,310	507,995	542,685	585,138
사회복지분야(B)	80,104	95,806	125,757	137,250	158,00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64	20.86	24.76	25.29	27
인구수(C)	232,787	236,944	242,077	248,287	255,8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44	404	519	553	6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 2015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1,580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7%를 차지하여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무상보육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5,138	48,668	8.32%	
민간경상보조 (307-02)		3,423	0.59%	
사회단체보조 (307-03)		802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3,700	0.63%	
사회복지보조 (307-10)		13,867	2.37%	
민간자본보조 (402-01)		11,455	1.9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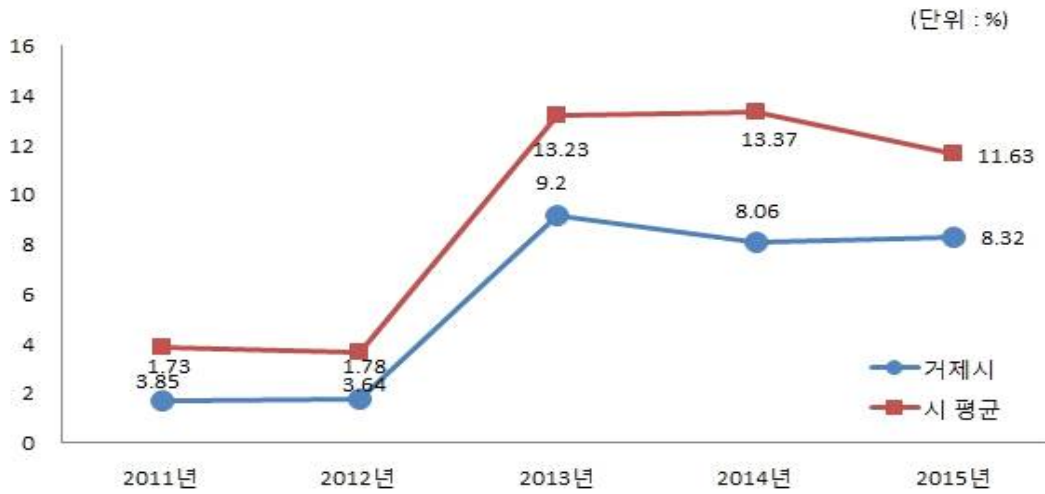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429,739	459,310	507,995	542,685	585,138
지방보조금(민간)	7,431	8,180	46,713	43,721	48,668
비율	1.73	1.78	9.20	8.06	8.32

※ '11 ~ '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 2015년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전년대비 49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 세월호사고로 인한 각종 행사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감소했던 지방보조금 지출이 2015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견내량 어민회관 신축공사	견내량 어촌계	견내량 어민회관	건물1동 130.90㎡	2015	195	1	195	거제시 견내량1길 49-18	신규취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건물	연면적 284.94㎡	2105	282	1	282	거제시 사등면 지석로 94	신규취득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	하청영농조합법인(남정우)	항공기(무인헬기)	FAZER(L35-3-00 0153)	2016	220	1	220	하청면 유계8길 32	신규취득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울금가 공현대화)	농업회사법인 산촌허브(주)	울금가공보관시설	지상2층(498.78㎡)	2016	664	1	664	거제시 동부면 부춘길 198	신규취득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중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중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5,138	1,528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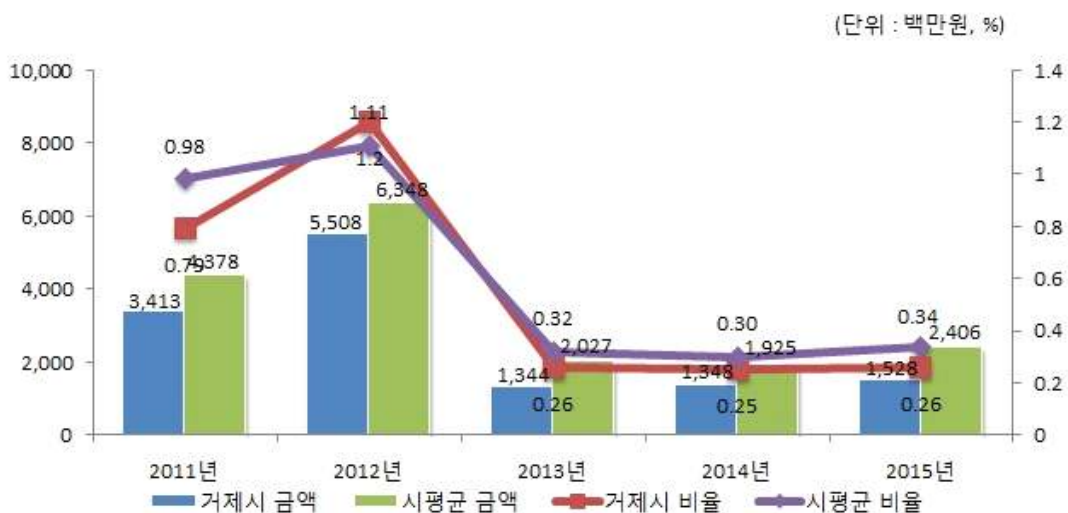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429,739	459,310	507,995	542,685	585,138
행사·축제경비	3,413	5,508	1,344	1,348	1,528
비율	0.79	1.20	0.26	0.25	0.2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시의 행사·축제 경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세계조선해양축제 개최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시의 2015년 행사·축제 경비 지출금액은 878백만원, 비율은 0.08% 낮습니다.